

【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】

□ 지원개요

- 용자규모 : 200억원 (협조용자)
- 용자한도 : 업체당 최대 2억원 (기존한도와 별도)
- 용자기간 : 3년 (1년 거치 2년 균분상환)
- 용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 (2.0%)
- 가점부여 : 10점 이내
 -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,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
 - 도 유망중소기업, 노사문화우수기업, 여성기업, 산업단지 입주기업, 에너지 절약기업 등
 -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※ 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(별표 2)

□ 지원대상

- 「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」에 따른 “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”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
 - ※ 자금 신청일 기준,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만 가능

□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

- 구비서류

구 분	제출서류
공통서류	①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은행 발행) ⑤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
해당서류	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등

- 평가·지원결정 및 통보 : 경기신보 영업점
 - 평가항목 : 재무항목, 비재무항목, 가점, 감점
 - 지원결정 :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
 - 결정통보 :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
 - ※ 용자취급기한 :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
-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
 - 경기신보 관할지점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

- 용자취급은행 : 협약체결 은행
 - 협약체결 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산업, 수협, 신한, 우리, 하나, SC, 광주, 대구은행, 새마을금고(12개)